

교육부령 제 호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 중 “20만원”을 “200만원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10만원”을 “100만원 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요건,”을 “요건,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 등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포상금의 지급기준 등)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: <u>20만원</u> 2. (생략) 3. 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행위: <u>10만원</u> ② ~ ⑤ (생략)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, 증거자료의 <u>요건</u> ,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	제17조(포상금의 지급기준 등) ①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200만원 이내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100만원 이내</u>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<u>요건</u> , <u>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</u> <u>등</u> ----- ----- -----.